## 2013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 (추록) - 주 민 규 저

2013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(4판, 1쇄)의 추록을 올립니다. 2013. 2. 15. 세법 시행령 확정 공포시 일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. 본 교재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 2013. 2. 15. 저자 드림

page	행	종 전	수 정
5	아래7	⑨ 국제조세조정~(이하 생략)	⑨번 문항 (모두 삭제)
46	위9	표안 ② ~ 평가한 가액(단서 추가)	(단,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시 비상장법인이 보 유한 상장주식의 가액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 로 평가함)
128	위6	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~	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~
133	표안	③ 의 산식 중 분모와 비율 ( <u>16</u> - 연금수령연차*) , <u>130</u> %	( <u>11</u> - 연금수령연차*) , <u>120</u> %
	표안 주석	(연금수령연차가 <u>16년</u> 이상인 ~	(연금수령연차가 <u>11년</u> 이상인 ~
		(가) 기산연차는 2013년 <u>시행령 시</u> 행 전에~ : 제11년차	(가) 기산연차는 <u>2013. 3. 1.</u> 전에~ : 제 <u>6년</u> 차
		<u>(다)</u> 그밖의 경우 : 1년차	삭제
	표안	종신연금 요건 모두 삭제	종신연금이란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(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)에 따라 받는 연금을 말한다.
101	위3	박스안 내용	아래 (수정1)로 대체해주세요
134	위6	~(위 ②의 경우 제외)~	~(위 ②의 경우 제외)~
	아래15	~어린이집 <u>등에</u> 지급한 급식비	~어린이집, 학원 및 체육시설(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함)에 지급한 급식비
149	아래11	~어린이집 <u>등</u> 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학교 <u>수업료</u> 및 특별활동비	~어린이집, 학원 및 체육시설(초등학교 취학 전 아 동의 경우만 해당함)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, 방 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
160	아래10	② 향후 퇴직급여를~(이하 생략)	②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~(이하 생략)
	아래9	③번 문항 (수정내용으로 대체)	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38조에 따라 퇴직연 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
162	표안	주주회원권*	주석표시 삭제
216	표안	⑦번 내용 중 : ~ 소유자가 <u>사업시</u> <u>행자로부터 그</u> 재화에 대한 ~	~ 소유자가 <u>수용된</u> 재화에 대한 ~
	아래2	(산학협력단은 대학과의 특수관계 인에서 제외함)	(산학협력단과 대학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은 제 외함)
219	아래8	<u>원에서 세되임</u> 국외위탁가공재화의 양도	<u>커</u> 커 의 기 의 의 의 의 기 의 의 의 기 의 의 기 의 의 기 의 기
222	아래1	~ 국외위탁가공재화 양도	~ 국외위탁가공재화 양도시 그 원료의 반출
444	्रिया	- 74717/10/14 6E	- ㅋㅋㅋㅋ/١٥/씨최 δ <u>ㅗ/ 그 전표</u> 커 렌 <u>ㅌ</u>

page	행	종 전	수 정
220	아래15	⑤ ~ 방식을 준용하여 <u>시설소유권을</u>	⑤ ~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
		<u>이전받기 전까지</u> 둘이상의 과세기간	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
		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	하게 <u>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(지급받는 대가</u>
		<u>하는 경우(</u>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용	<u>와</u>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용역제공기간의 월수
		역제공기간의 월수로 나눈 <u>금액)*<b>2</b></u>	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)(초월산입, 말월불산입)
235	위7과 위15	~ 과세기간이 <u>끝난</u> 후 ~ (중략)~ <u>그</u>	~ 과세기간이 <u>지난</u> 후 ~ <u>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</u>
			<u>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</u> 매입세액은
280	아래2	<u>과세기간 내의</u> 매입세액은 공제	공제
246	아래 표	(부가가치세 환급) 3번째 의 내용:	해당 제목 및 내용 모두 삭제
		무체물 공급시 거래장소 특례	
247	아래2	*직전 <u>과세기간에</u> 신규로~	*직전 <u>1역년 중</u> 신규로~
	위7	신규사업자는 <u>최초 과세기간의 다음</u>	신규사업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다음
		<u>과세기간부터</u> 공급대가에 ~	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공급대가에~
248	위10	~다음 다음 <u>과세기간부터 그 다음</u>	~다음 다음 <u>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</u> 변경된~
240		과세기간까지 변경된 ~	
	위12	~ 경 <u>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</u>	~ 경정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~
		<u>다음</u> 과세기간부터~	
251	위11	② 환급청구 : 납부의무 ~(이하생략)	②문항 모두 삭제
253	아래1	<u>5%</u> , <u>25%</u>	<u>10%</u> , <u>50%</u>
254	아래7	~ 변경된 날 <u>이 속하는 과세기간의</u>	~ 변경된 날 <u>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</u> 납부할
234		납부할 세액에~	세액에 ~
277	위7	~판매대금은 <u>2012</u> 년 7월 16일에~	~판매대금은 <u>2013</u> 년 7월 16일에~
291	표안	2012년 7월 1일 현재 시가	2013년 1월 1일 현재 시가
302	위4	~ 구체적으로 <u>확</u>	~ 구체적으로 <u>확인</u>
305	아래14	(표안 구분칸) 제척기간 <u>기산일</u>	제척기간 <u>특례기간</u>

## (수정1)

- 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
- ② 2013.3.1.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.3.1.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
- ③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

## p 162 위의 표 아래 주석 추가(종전 원고에서 누락된 내용임)

\* 특정주식 A : 지분율 50%이상의 지배주주가 소유한 부동산(50%이상)과다법인의 주식 → 3년이내 총발행주식의 50%이상 양도시 과세

특정주식 B : 골프장, 스키장, 휴양콘도사업, 전문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(80%이상)과다법인의 주식  $\rightarrow$  1주 양도시에도 과세

## p 248 내용 아래 추가

[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특례] 2013.2.15.시행령 시행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가 4,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어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환된 과세유형을 2013.7.1.부터 2014.12.31.까지 적용한다.(부칙 10조)

- 이상 끝 -